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 부과에 관한 규칙



[시행 2022. 1. 1.] [기획재정부령 제882호, 2021. 12. 31., 타법개정]

기획재정부 (산업관세과) 044-215-4432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관세법」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부과대상 물품)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(「관세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.30.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. 다만,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(Photopolymer Violet Plate),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 (Double-layer Plate)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21. 12. 31.>
 - 1.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·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
 - 2. 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(mm)를 초과할 것

제3조(부과대상 공급자)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.

제4조(덤핑방지관세율)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.

부칙 <제882호,2021. 12. 31.>(관세·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)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[별표] 덤핑방지관세율(제4조 관련)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
		관세율(%)
중국	1. 코닥그래픽[Kodak (China) Graphic Communications Co., Ltd.]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10.32
	2. 보시카(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., Ltd.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3. 화광그래픽(Lucky Huaguang Graphics Co., Ltd.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4. 화광바오리(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., Ltd.)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5. 종인(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., Ltd.)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6. 그 밖의 공급자	8.78

비고: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급자와 제6호의 "그 밖의 공급자" 사이에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"그 밖의 공급자"에 대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.